

고체연료 사용시설 설치기준(제56조 관련)

1. 석탄사용시설

가. 배출시설의 굴뚝높이는 100m 이상으로 하되, 굴뚝상부 안지름, 배출가스 온도 및 속도 등을 고려한 유효굴뚝높이(굴뚝의 실제 높이에 배출가스의 상승고도를 합산한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440m 이상인 경우에는 굴뚝높이를 60m 이상 100m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굴뚝높이 및 굴뚝높이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석탄의 수송은 밀폐 이송시설 또는 밀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 석탄저장은 옥내저장시설(밀폐형 저장시설 포함) 또는 지하저장시설에 저장하여야 한다.

라. 석탄연소재는 밀폐통을 이용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마. 굴뚝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SO<sub>2</sub>), 질소산화물(NO<sub>x</sub>), 먼지 등의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기타 고체연료 사용시설

가. 배출시설의 굴뚝높이는 20m 이상이어야 한다.

나. 연료와 그 연소재의 수송은 덮개가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 연료는 옥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라. 굴뚝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